

2021 포천노곡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

제1조(목적) 학부모회는 포천노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학부모회의 명칭은 '포천노곡초등학교학부모회'라 한다.

제3조(기능)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2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
3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4.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

제4조(회원) 회원의 자격은 포천노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포천노곡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.

제5조(임원 등의 구성)

-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.
- ②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,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다만,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
-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감사를 둘 수 있다.
- ④ 학교장은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를 위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, 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원은 학부모회 임원 또는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.
- ⑤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.
- ⑥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.

제6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
-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학부모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,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의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7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,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(학부모회의 조직)

-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.
-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를 둔다.

제9조(총회)

-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/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
- ⑤ 총회는 회원의 1/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⑦ 회장은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10조(총회의 의결사항 등)

-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
 2. 학부모회 규정의 제.개정 사항
 3. 임원의 선출

4.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
 5. 예산 및 결산 보고
 6.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.
 -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2조 및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1조(대의원회)

-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.
- ② 대의원회는 임원, 학년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.
-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.
-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,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
-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대의원회의 의결사항)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제13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

제13조(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)

-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,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-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,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.
-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- ④ 학급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의 규정을 따른다.

제14조(기능별 학부모회)

-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,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-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.

제15조(해산)

-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·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.
-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 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.
-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.

제16조(청산)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7조(재정지원 등)

-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회계년도)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.

제19조(위임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제2조(학부모 총회의 소집)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.